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 및 발굴주의로 전환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00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760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주거급여에 관리비 포함(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3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체화(안 제3조제1호)	10
다. 청년 가구원 분리지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2제1항)	11
라.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안 제17조 및 제18조)	13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0760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7.

다. 회 부 일 : 2025. 1. 20.

2. 제안이유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2021년 6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12만 5,698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해 가구당 평균 18만 2,329원의 관리비를 미납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총 14만 7,125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했으나, 현행법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할 뿐, 관리비 지원 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 2022년 8월 기준 주거급여 지급 기준 대상 297만 가구 중 실제 주거급여를 받은 가구는 160만 가구로, 자발적 미신청 가구인 35.3%를 제외해도, 미수급 가구가 74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7조의2, 제8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신설, 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 등).
- 나. 주거급여제도가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굴체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4. 검토의견

가. 주거급여에 관리비 포함(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u>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u>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 ---수선유지비, 관리비, 그 밖의 수급품-----. 2. ~ 8.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u> <u>② 관리비의 보장범위 및 지급기준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u>③ 관리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현행	개정안
제10조(신청조사) ①·② (생략)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u>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조사)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략)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수급자가 지급받은 <u>임차료</u>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u>차임</u> (借賃)을 연체한 경우	2. ----- <u>임차료 또는 관리비</u> ----- ----- ----- <u>차임(借賃)이나 관리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 ----- ----- ----- ----- ----- ----- ----- -----.
1.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 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1.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u> ----- ----- ----- ----- ----- ----- -----
2.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 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2.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생략)
<신설>	6. (생략)
5. 그 밖에 <u>임차료 및 수선유지비</u> 를	7. ----- <u>임차료, 수선유지비 및</u>

현행	개정안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u>관리비</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¹⁾은 급여의 종류를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解産給與), ⑥장제급여(葬祭給與), ⑦자활급여로 나누어 규정²⁾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³⁾과 현행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⁴⁾는 ‘주거급여’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2) 2000년 10월 종합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탈수급의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당시 제도의 한계가 발생하자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의 맞춤형 빈곤정책을 마련하였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4)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 8. (생략)

지비, 그 밖의 수급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표 1] 주거급여지원 사업 집행현황(국비 기준)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지급가구	지급금액	지급가구	지급금액	지급가구	지급금액
임차료	1,231,967	2,083,228	1,307,609	2,507,063	1,379,599	2,557,538
수선유지비	19,607	124,700	19,500	124,590	20,350	127,200
기타	-	-	-	-	-	-
합계	1,251,574	2,207,928	1,327,109	2,507,063	1,399,949	2,684,738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관리비는 주거급여의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거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리비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관리비는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하여 실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⁵⁾⁶⁾으로 체감되고 있

5) 보건복지부 최저주거비 및 가계동향조사 항목에서 주거비 항목은 실제 주거비(월세) 이외에 관리비(공용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조사

음.

그런데 현재 주거지출(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지출 등) 중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광열·수도비는 생계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나, 공용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복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관리비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실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주거급여의 취지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며,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주거급여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

《 보건복지부 주요 조사항목 중 주거비 범위 》

보건복지부 : 최저생계비			가계동향조사 : 주거 및 수도·광열		
분 류	주요 항목		분 류	주요 항목	
최저 주거비 (임차)	임대료	(월세) 임대료/ (전세) 조달비용, 보증보험료, 인지세	주거	실제주거비	월세, 기타의제주거비
	보유비용	관리비(공용관리비, 공용부분 개별 사용료)		주택유지 및 수선	수선재료, 설비·수리서비스
		그 외 주거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배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공동주택 관리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 자료: 국토교통부

- 6) 통계청은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의 12가지 품목 중 하나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 사용, 유지 등과 관련된 품목(전세, 월세, 설비수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주택수선재료)을 ‘주거비’로 분류함.

하면서 주거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급여법」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급여법」 상의 주거급여의 범위가
개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주거급여 범위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⁷⁾.

7) 「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 방안」(2024.7.1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안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제1항의 주거급여의 범위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임.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체화(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u>할 것</u> 2.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1. -----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u>할 것</u> 2.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거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을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맞는 주거비 유지라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려는 내용임.

현행 「주거기본법」 제3조제1호⁸⁾에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8)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다. 청년 가구원 분리지급 대상 확대(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u>수급자의</u>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u>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u>수급권자의</u>----- ----- ----- -----<u>수급권</u> <u>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와 관리비</u>-----.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7조의2⁹⁾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지급¹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문언상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한 청년가구원은 ‘수급자’의 미혼자녀이므로,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사용대차¹¹⁾를 통해 주거하는 사유로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는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음.

9) 「주거급여법」(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10) 법률 개정을 통한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신설 이전인 2020. 8. 10.에 청년가구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여 2021년부터 분리지급을 시작함.

11)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하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상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거급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급여 청년가구원 분리 지급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됨.

라.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안 제17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4. (생략) <신설> <신설>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 1. (생략) 2.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 6. 시·도 및 시·군·구별 수급권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에 해

현행	개정안
5. (생략) ④·⑤ (생략) 제18조(지도·감독 등) (생략) <신설>	당하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 수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 라.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발굴조사 및 신청현황에 대한 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주거급여제도를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급여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체납·단전·단수 등 위기가구에 관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거급여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개별급여로서,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적용¹²⁾을 받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위기가구의 발굴’¹³⁾,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¹⁴⁾,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¹⁵⁾ 등 사회보장급여의 발굴주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11. (생략)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거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발굴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의 종합적인 수급 대상자 발굴체계와 별개로 주거급여제도만을 위한 발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소득인정액 및 임차료 부담수준을 중심으로 지급이 결정¹⁶⁾되고 있는 주거급여가 거주형태 등 보다 다양한 주거 요소를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주거급여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안 제17조제2항) 및 ‘체납·단전·단수 등 수급자 정보 요청’(안 제17조제3항)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주거급여신청 이후 주택조사 등 신청조사¹⁷⁾를 실시함에 있어 시스템 간 연계와 위기가구 정보 활용이

16)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④ (생략)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④ (생략)

17) 「주거급여법」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정기 발굴조사 실시’와 ‘운영실태 점검’(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서는,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발굴조사의 정기실시와 운영실태 점검이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종합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능가구(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는 약 180만~185만 가구로 추정¹⁸⁾하며, 같은 기간 전체 수급 가구는 182.6만 가구¹⁹⁾이므로, 현재 수급 가능 가구 대부분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7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 국민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19) 2024년말 기준, 임차료 수급 가구 : 138만, 수선유지급여 수급 가구 : 10.3만, 사용대차·시설거주 가구 : 34.3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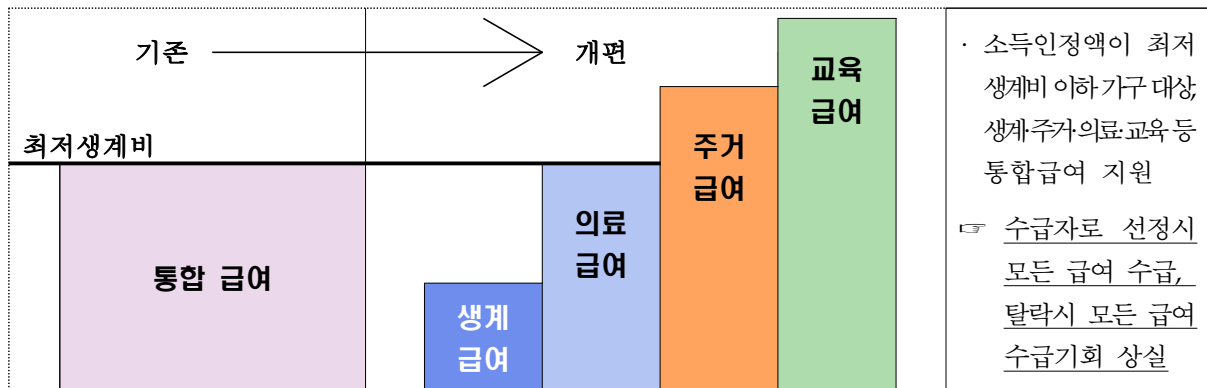
참고 1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개요('15.7월~) ※자료 : 국토교통부

□ 맞춤형 급여 개편('15.7~)

- (급여개편 배경)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
 -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생계·주거·교육 등 7종)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all', 탈락하면 'nothing'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

*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



<개편전 주거급여 지급기준>

-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임차가구, 자가가구 구별 없이 단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현금지원 → 주거급여 목적이라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명목

- (제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15.7)

-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주거급여법(14.1)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준용

□ 개 요

-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중위소득 48% : (1인) 114.8만원 (2인) 188.8 (3인) 241.2 (4인) 292.7만원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9.1~66.7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원자격(기준 중위소득의 32%)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

<보수범위별 보수한도액 및 수선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 장애인은 무장애 관련시설(단차 제거, 문폭 확대) 설치 추가지원(380만원),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50만원)